

초소형자동차 옆면반사기의 설치 및 반사성능 기준(제49조제4항제3호 관련)

1. 설치기준

가. 배열

- 1) 별표 6의27 제1호의 IA, IB 옆면반사기는 초소형자동차 길이를 3등분하여 앞부분, 뒷부분 또는 앞·뒷부분에 설치하여야 하며 각 측면에 1개 또는 2개를 설치할 것
- 2) 추가로 설치된 옆면반사기의 경우 설치하는 다른 등화신호 기능을 저해하지 않아야 한다.

나. 설치위치

지상 250밀리미터 이상 900밀리미터 이하일 것. 다만, 다른 등화장치와 결합된 경우에는 1,200밀리미터 이하에 설치할 수 있다.

다. 관측각도

- 1) 옆면반사기의 발광면은 상측 10도, 하측 10도 이하 어느 범위에서도 관측될 것. 다만, 등화의 기준축이 지상에서 750밀리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발광면은 하측 5도 이하 어느 범위에서도 관측되어야 한다.
- 2) 앞측 및 뒷측은 45도 이하 어느 범위에서도 관측될 것

라. 옆면반사기의 비추는 방향은 자동차 옆면일 것

2. 반사성능은 별표 6의27 제1호에 따른 반사성능기준에 적합할 것